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13호)

202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2
※ 참고자료	11
1.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현황	11
2.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현황	14

I. 제안경위

2022년 4월 28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개정안은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의 항목으로 간병비를 추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석면피해자의 간병인 고용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간병비</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 ----- ----- ----- -----

현행	개정안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u><신설></u>	----- -----. ② ~ ⑨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간병비) ① 간병비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u> <u>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피인정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u> <u>③ 간병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u> <u>④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u>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함)받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5·6).

석면피해인정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의 종류로는
 ①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②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 ③ 장례비가 있으며, 그 밖에 ④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지
 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가 있음.

[표] 현행법상 구제급여 지급 관련 규정

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
 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
 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

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간병비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¹⁾ 구제급여의 일종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구제급여의 일종으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중증의 석면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인정자가 간병인을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1)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받는 자가 급여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본인부담금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법 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간병비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요양생활수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구제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그 재원인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이러한 의견까지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에 따라 중위소득의 11.4%에서 4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석면피해인정자에게 지급됨.

물론,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특정한 지출항목을 지원하는 간병비와 그 성격상 차이가 있고,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를 별도의 지원항목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²⁾도 있으나,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목적을 고려할 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이 요양생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구제급여의 재원인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면, 2021년 말 기준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도 대비 95억 원 감소한 291억 원으로, 여유자금의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³⁾

이는 기존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급여 지급 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 노력 등에 따라 2021년 902명의 석면피해자⁴⁾를 신규 발굴하여 구제급여 지출이 늘어난 결과로, 2021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약 39억 원 증가하였음.

환경부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석면기금의 여유자금은 202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인 사업자 분담금의 요율 인상, 정부출연금 추가 편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구제급여 수급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경우 2021년에 93명의 수급자에게 총 7억 2,50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2021년 말 기준 간병비의 누적 지급액이 27억 4,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고갈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셋째, 환경 분야에서 건강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

3) [참고자료] 참조.

4)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후 누적된 석면피해인정자는 5,726명임.

5)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인의 종류(전문 간병인 여부)에 따라 하루에 약 4~6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됨.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간병비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음.

[표] 간병비 지급 관련 입법례

법률명	재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원인자 부담금 + 정부출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 보험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상부담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가입자 공제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인, 국가, 법인의 부담금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수급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⁶⁾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제도로써, 피해자 일반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법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유사하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급여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지급한 구제급여와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차이가 있음.

6) 다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급여의 재원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넷째,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시금 형태로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일시금 지급 이후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일본,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급여의 일부로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음.⁷⁾

다만,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수당 산정 시 간병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점에서,⁸⁾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요양생활수당에 간병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간병비의 별도 지급 여부는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두터운 피해구제의 필요성, 요양생활수당과 별도로 간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7) 프랑스의 경우 ‘완전보상’ 원칙 하에 실제 간병비로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간병수당으로 월 69,970엔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2019. 참고)

8) 일본의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 지정질병에 걸려 현재 요양 중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에는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의학적 처치·수술 및 그 외 치료, 자택 요양 관리 및 간병·간호, 병원 및 진료소 입원 및 그에 따른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내에서 간병·간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내의 간병·간호 비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요양수당은 의료비 이외의 입원 및 통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친인척에 의한 개호(간병)를 요하는 비용 등 위자료 및 이실이익의 보전, 생활보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수형, 위의 글)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 참고자료

1.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현황

※자료: 환경부

□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11.1.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구제대상 질병)**

석면질병	주요 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
원발성 폐암 (석면폐암)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일 경우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
석면폐증	석면으로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섬유화되고 고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및 특별유족조위금(생전에 받지 못한 의료비 및 생활비 보전)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건강보험 적용 급여 중 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석면질병 및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정액지급)
- (장례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특별유족조위금-그동안 받은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하기 전 지급신청을 못한 요양급여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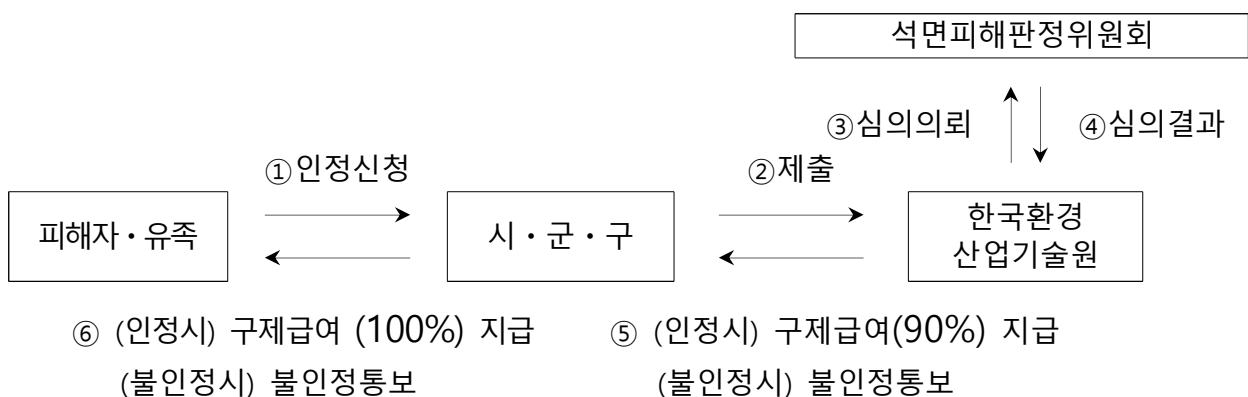
[구제급여 지원금액(2022년 기준)]

석면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1,548,540원>	장례비의 1,500/100 <43,864,3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2,924,29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114,940원>	장례비의 750/100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743,290원>	장례비의 500/100 <14,621,450원>	
	2급			
	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371,640원>	장례비의 250/100 <7,310,720원>	

□ (재원) ‘공유책임 원칙’하에 정부·지자체·산업계가 공동 부담

- (정 부)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매년 정부출연금 조성
- (지자체) 구제급여 지급액의 10% 부담
- (산업계)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 및 건설 공사 사업장과 석면 사용량 누계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분담금 부과

□ (구제절차)



□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현황)

- 석면피해인정 4,747명, 특별유족인정 979명 총 5,726명을 환경적 석면피해자로 인정('21.12월 말 기준)
-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 **5,549명**에게 총 **1,186억원**의 구제급여 지급('21.12월 말 기준)

2.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현황

※자료: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기금 발생 및 기금소요 추계 현황

- (현황) 2018년 이후 ‘수입 < 지출’ 로 석면기금 여유자금의 감소 추세를 추계하며, 현 추계* 적용시 ‘23년 기금 고갈 예상

* 요율인상 등 수입증대 방안 및 지출 축소 방안 미적용시

< 석면기금 여유자금 실적 및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수입	194	175	156	163	167	165	173	176	180	185	190
지출	123	191	179	215	214	260	329	335	364	395	425
수지차	71	-16	-23	-52	-47	-95	-156	-159	-184	-210	-235
여유자금	494	478	484	431	386	291	135	-24	-208	-418	-653